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988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988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656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신준선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황준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1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656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나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3.경 H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천안시 서북구 소재 ‘I’라는 상호의 카페 영업권을 대금 2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H은 약정기한 내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H의 대리인인 J로부터 그가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C을 대리한 J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가 실제로 H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선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이미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거의 시가에 근접한 복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임차인도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채무관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H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대리인인 J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행위로서 통상적인 거래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의구심이 들 만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일부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트리스경 사지붕 24층 아파트

1층 373.780㎡

2층 371.252㎡

3층 371.252㎡

4층 371.252㎡

5층 369.037㎡

6층 369.037㎡

7층 369.037㎡

8층 369.037㎡

9층 369.037㎡

10층 369.037㎡

11층 369.037㎡

12층 369.037㎡

13층 369.037㎡

14층 369.037㎡

15층 369.037㎡

16층 369.037㎡

17층 369.037㎡

18층 369.037㎡

19층 369.037㎡

20층 369.037㎡

21층 369.037㎡

22층 369.037㎡

23층 369.037㎡

24층 369.037㎡

지하층 377.415㎡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2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63.73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 50521.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50,521.1분의 81.639

